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4. 21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4월 8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: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4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안의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 등을 개정하여 본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,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 및 지급 기준 정비 (안 제3조)

- 장학생 정원 규정 정비 (안 제6조)
- 장학금액 정비 (안 제7조)
 -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따른 장학금 정액 규정
- ‘자치법규 입안 지침’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- 현행 조례의 제2조(장학금의 종류)를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하던 것을 삭제하였음.
 - 안 제3조(장학생의 자격)에서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 규정하고,

제2항에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거나 받을 예정일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 단서규정으로 본 장학금 액수보다 다른 장학금 액수가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, 해당 부서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인지 의문이 있음.
 - 안 제6조(장학생 정원)에서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영등포구의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하였음. 2021.4.10. 기준 통장 정원은 583명, 통장현원은 574명으로 정원의 15%는 87명에 해당됨.
 - 안 제7조(장학금)는 매 학기별로 고등학생 50만원, 대학생 100만원으로 정액지급하려는 것은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액 지급 가능 규정을

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.

- 안 제9조(지급정지)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통장 사직, 부정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추가하여 환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제1항제1호의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외에는 부서에서 확인이 어려워 제3조제2항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임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통장·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라 우리 구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자 및 금액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다만, 집행부에서는 타 장학제도 등과 비교하여 장학금 적정여부, 중복제한 규정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3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4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안의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 등을 개정하여 본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,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 및 지급 기준 정비(안 제3조)
- 나. 장학생 정원 규정 정비(안 제6조)
- 다. 장학금액 정비(안 제7조)
 -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따른 장학금 정액 규정
- 라. '자치법규 입안 지침'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1. 3. 11. ~ 3. 31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 호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

② 제1항제1호의 장학생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(이하 “타 장학금”이라 한다)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,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.

③ 제1항제2호의 장학생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터 타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타 장학금과 제7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

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2회 동장으로부터
학년 별로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영등포구의 통장 정원의 15 퍼센트 범위 이
내로 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(장학금)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, 예산의 범위
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.

1. 고등학교 : 50만원

2. 대학교 : 100만원

제9조의 제목 “(지급정지)”를 “(지급정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
의 부분 중 “장학생에게”를 “장학생으로”로, “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정지하고 지급
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
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조(장학금의 종류) 통장자녀장학금</u> <u>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.)의 종류는</u> <u>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</u> <u>한다.</u> <u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장학생은 통</u> <u>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</u> <u>한다.</u> <u>1.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·반사회</u> <u>운영·질서 : 환경개선·선행 및</u> <u>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</u> <u>자녀</u> <u>2.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</u> <u>품행이 단정하고 기능·체육·예</u> <u>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</u> <u>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통</u> <u>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</u> <u>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</u> <u>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</u> <u>제외한다.</u> <u><신 설></u>	<u><삭 제></u> <u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금은 다</u> <u>음 각 호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</u> <u>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</u> <u>한다.</u> <u>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</u> <u>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</u> <u>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 호(이</u> <u>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</u> <u>② 제1항제1호의 장학생이 국가, 지</u> <u>방자치단체,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</u> <u>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(이하 “타</u> <u>장학금”이라 한다)를 받거나 받을</u> <u>예정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되,</u> <u>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</u> <u>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.</u> <u>③ 제1항제2호의 장학생이 국가, 지</u> <u>방자치단체, 그 외 다른 기관으로부</u>

제4조(추천) 장학생은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.

제5조(선발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.)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6조(장학생 정원)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

제7조 (장학금)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지급정지) ① 장학생에게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

터 타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타 장학금과 제7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<삭 제>

제5조(선발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.)은 매년 2회 동장으로부터 학년 별로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장학생 정원)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을 고려하여 영등포구의 통장 정원의 15 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한다.

제7조 (장학금)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.

1. 고등학교 : 50만원

2. 대학교 : 100만원

제9조(지급정지 등) ① 장학생으로

지급을 하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 략)

<신 설>

② (생 략)

-----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
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
이 지급된 때

② (현행과 같음)